# PMD 구매관리 절차서

| 표 준 내 역 | | | |
| --- | --- | --- | --- |
| 표 준 번 호 : HSA-700D<br>(STANDARD NO) | | 제 정 일 : 2016. 09. 26<br>(ISSUE DATE) | |
| 개 정 번 호 : 03<br>(REVISION NO) | | 개 정 일 : 2025. 9. 25<br>(REVISED DATE) | |
| 식 별 | 절 차 서 | | |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성 명 | 이성일 | | 전희용 |

| 표 준 검 토 의 뢰 서 | | | | 표 준 명 | PMD 구매관리 절차서 |
|---|---|---|---|---|---|
| | | | | 표준번호 | HSA-700D |
| 제 정 일 | 2016. 09. 26 | 개 정 일 | 2025. 9. 25 | 작성부서 | 글로벌구매2팀 |
| 개정번호 | 03 | 검토의뢰일 | 2025. 10. 1 | 작 성 자 | 이성일 |

상기와 같은 절차서를 문서작성 절차서에 의거하여 제정(  ), 개정( V ), 폐기(  ),
검토 의뢰합니다.

|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글로벌구매2팀 | 팀장 | 조성길 | | |
| 글로벌구매1팀 | 팀장 | 박연준 | | |
| CS품질팀 | 팀장 | 최성호 | | |
| RM팀 | 팀장 | 이정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의제기내용 (전자결재상의 이의내용 부착)

# 개정 전·후 변경사항

| 절차서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HSA-700D | 5.6 단가의 계약<br>- 단가 적용 원칙 없음<br>- 화폐 적용 원칙 없음<br>5.7.6 환율 적용 원칙 없음<br>5.7.7 P/O 운영 원칙 없음<br>5.13 단종 관리 없음<br>※ 주문서(HSA-700D-01) 발주 조건<br>- 단가, 환율 적용 조건 없음 | 5.6 단가의 계약<br>- 단가 적용 원칙 추가<br>- 화폐 적용 원칙 추가<br>5.7.6 환율 적용 원칙 추가<br>5.7.7 P/O 운영 원칙 추가<br>5.13 단종 관리 추가<br>※ 주문서(HSA-700D-01) 발주 조건<br>- 단가, 환율 적용 조건 추가 |

##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한솔 테크닉스(주) PMD 사업부(이하"조직"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설비/용역 포함, 이하"자재"라 한다)의 구매업무 절차에 적용한다.

## 2. 목적

이 절차서는 "당사규격에 부합하는 자재를 적정가격으로 적기에 적정수량이 조달"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제품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3. 용어의 정의

3.1 구매(購買, purchasing/procurement/outsourcing)

자재나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구매관리(購買管理, Purchasing Management)

원활한 생산(서비스)활동에 필요한 자재조달 계획과 통제활동을 말하며, 경영활동 전반과 연결되어 이익의 원천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한다.

3.3 자재(資材)

생산에 필요한 물자(Materials), 물건(Things), 물품(Goods)등으로 표현되며, 광의의 자재는 생산을 위한 모든 시설, 설비를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3.4 구매요청서(구매청구서)

자재 구입의 근거 자료가 되는 문서(발주계획서, 품의서 등 이에 준하는 결재문서)를 말한다.

3.5 가 단가(예상 단가)

단가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추정단가를 말한다.

3.6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를 근거로 해당내역(품목, 수량, 가격, 납기일 등)을 명시한 주문 양식을 말한다.

3.7 LOT

경제적, 효율적 제품생산을 위해 Group 화 한 집합이며, 그 크기를 LOT Size 라 한다.

3.8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수입자요청의 거래은행이 거래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완결되었을 때 대금결재를 수출자에 확약하는 증서로, 수출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9 L/C AMEND

기 발행된 L/C 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L/C 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변경 동의서가 작성되는 행위를 말한다.

3.10 내자재

국내에서 조달하여 당사 생산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3.11 외자재

국외에서 수입하여 당사 생산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4.1 구매 팀장

4.1.1 구매 단가를 승인 한다.

4.1.2 발주서 및 매입내역을 승인한다.

4.2 구매 담당자

4.2.1 구매 단가를 작성한다.

4.2.2 발주서 및 매입내역을 작성한다.

## 5. 업무 절차

5.1 구매원칙

5.1.1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제조회사의 판매 조직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구매를 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5.1.2 구매처는 내, 외자재 거래선 등록대장(AVL: Approved Vendor List)에 등록된 거래선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구매 거래선 등록은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절차서 (HSA-701D)"에 따른다.

5.2 일반사항

5.2.1 구매 담당자는 생산/판매회의 결과로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량, 단가등을 확인한다.

5.2.2 구매 담당자는 주문서(ERP P/O)를 구매팀장 승인 후 원본보관, 부본은 거래선 발송한다.

5.2.3 기 구입 품목이 아닌 신규 구매자재일 경우, "승인원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3 견적

5.3.1 견적업체의 선정

청구 자재의 구분에 따라, 구매 담당자가 내/외자재 거래선 등록 대장에서 견적업체를 선정 한다. (단, 설비/계측장비는 추천 받은 업체 또는 신규업체를 선정하여도 무방하다.)

5.3.2 복수 견적의 원칙

견적업체는 2 개사 이상을 동일한 조건에 의해 견적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성격상 복수견적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구매팀장의 판단으로 특정거래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허품, 실용신안 품 등을 구매할 경우
2) 양산 기술 또는 설비에 있어서 다른 적합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3) 제품 승인에 포함된 자재를 구매할 경우
4) 고객 지정자재를 구매할 경우

5.4 견적의 접수 및 유지관리

5.4.1 견적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전화 및 면담 후 서면 접수할 수 있다.

5.4.2 견적서는 구매담당자가 보관하며, 반환 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5.5 견적의 생략

5.5.1 정부의 고시 가격 및 이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품목

5.5.2 영업 매출처에서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거래선 및 단가를 결정 하는 경우

5.5.3 단가품의를 득한 품목

5.6 단가의 계약

5.6.1 구매 담당자는 시장조사, 복수견적 비교, 표준구매원가 계산에 의하여 물품의 예상단가를 산출/검토하고, 거래선 협의(가계약)결과에 대해 구매팀장 승인을 득하여 문서 계약한다.

※ 단가의 적용 원칙 △2

1) 단가는 납품일 기준 최종 합의된 화폐와 금액을 적용한다.

2) 단가는 구매 담당자 품의와 팀장 승인을 통해 지정 Site에 등록한다.

3) 승인을 통해 등록된 단가는 조정/삭제하지 않는다.

4) 단가는 납품일 이내 입고일 기준 5.7.6항 "환율의 적용 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5) 발주서의 단가는 현재 "발주일" 단가와 미래 "적용일" 단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5.6.2 단가 계약서는 구매담당자가 보관하며, 거래선에게 반환 또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5.6.3 구매 담당자는 화폐의 적용 원칙 중 협력사와 협의하여 대금 지급 화폐를 결정한다. △2

※ 화폐의 적용 원칙 (협력사 검토 조건)

1) 단가 체결과 대금 지급은 "동일 화폐"로 적용한다.

2) USD 단가 체결 후 자국화폐 지급 시 "매입 시점 환율"로 재 산출 한다.

3) 자국 화폐로 단가 변경 시 "단가 체결 시점 기간 평균 환율"을 적용 한다.

4) 지급 화폐 변경 요청 시 1 회에 한하여 화폐 변경 허용한다. (재 변경 없음)

5.7 발주

5.7.1 발주는 소정의 주문서(P/O) 발행에 의한다.

5.7.2 주문서(P/O)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1) 품명, 규격 및 자재 CODE

2) 주문수량 및 단위

3) 단가 및 금액

4) 납기

5) 납품장소

6) 주문번호(P/O NO)

5.7.3 발주 원칙 및 조정

발주한 물량은 전량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주문서가 발행된 이후 발주한 물량을 취소하거나 줄여야 할 경우, 거래선과 합의 후 발주조정 한다.

5.7.4 발주 조정에 따른 보상

구매 담당자는 발주 조정에 따른 거래선 피해보상을 조치하고, 긴급 발주에 의한 거래선 납기 지연에 대해 보상청구 또는 평가 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7.5 RISK 발주

구매 담당자는 PSI 계획 기준 자재점검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초과 소요량에 대해 자재 RISK 발주 검토하여 구매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1) RISK 발주 검토 대상

① 신모델, 신제품, 선행 발주, 선행 생산, 기타 특정 장납기 자재를 발주할 경우

② 사양 미 확정 자재의 사전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경영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RISK 발주의 합의는 유관부서팀장을 포함하여 사업부장까지 결재한다.

3) 초과 소요량의 RISK 발주 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까지 결재한다.

5.7.6 구매 담당자는 "환율의 적용 원칙"을 협력사와 합의하여 환율을 적용한다. △2

※ 환율의 적용 원칙

1) 매매기준율, 최초 고시, 기간 평균 환율로 1개월 단위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2) 환율은 입고월 기준 D-2개월 26일부터 D-1개월 25일까지 기간 평균을 적용한다.

3) 월별 납품 총액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며 USD, EUR, THB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4) 해외 입고 자재는 B/L발행일 기준 변동환율을 적용한다.

5.7.7 구매 담당자는 "P/O 운영 원칙"을 협력사와 합의하여 적용한다. △2

※ P/O 운영 원칙

1) 선 매입, 매입 이월을(회계기간 전/후 재고자산의 구매, 이전, 인도) 금지한다.

2)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P/O Cancel 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다.

3) 당월 P/O는 발주일로부터 당월 운송 L/T내에 단가 적용일을 지정한다.

4) 차월 적용일 지정 발주 시 별도 P/O 를 발행하여 관리한다.

5) 동일 P/O 내에는 품목별 단일 단가만 반영 한다.

6) 적용일 전 입고/매입 등록을 금지하며, 단가/수량을 시점에 맞게 관리 한다.

7) 협력사의 선행 입고 시 입고일과 적용일을 협의하여 일치 시킨다.

→ 입고일 기준 견적서 재 접수 후 공급처 단가 변경 등록

8) P/O 적용일 이전 조기 입고 시 입고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한다.

→ 입고일 기준 발주일 단가 적용 발주서 재 발행

5.8 계약

5.8.1 내자재의 경우

1) 구매 담당자는 거래 개시일(발주일)전에 기본거래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해당 거래선 대표이사와 당사 대표이사의 날인을 득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고, 해당 거래선과 각각 1 부씩 유지 관리한다.

2) 기본거래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 개월 전까지 당사, 거래선 어느 일방의 변경 또는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시 1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거래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내용을 2 부 작성하여, 양사 대표이사 날인 후 각각 1 부씩 기본거래계약서에 첨부 유지 관리한다.

5.8.2 외자재의 경우 해당 거래선에 당사 P/O 를 송부하고 거래선의 Offer Sheet 를 접수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5.9 납품

5.9.1 구매 자재의 납품장소는 당사 지정장소 또는 주문서(P/O)에 별도 지정한 장소로 한다.

5.9.2 자재의 운반 비용은 해당 거래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5.9.3 자재 입고에 관한 업무는 "자재관리절차서(HSA-703D)"에 따른다.

5.10 납기관리

5.10.1 구매 담당자는 주문서 기준 납기관리하며, 필요 시 당사 생산계획 및 자재조달 LEAD TIME 을 감안하고 생산계획 변경 시 해당 거래선과 협의하여 납입지시를 재 발송 한다.

5.10.2 구매 담당자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납기준수 불가통보를 받거나 납기준수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구매팀장에게 보고한다.

5.10.3 구매팀장은 납기준수 불가한 자재에 대해, 해당 거래선과 납기 협의하며 납기 조정이 불가 할 경우 당사 생산관리와 협의하여 생산계획을 조정토록 한다.

5.10.4 구매 담당자는 납기까지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선을 관리/독려하며 납기지연은 별도의 계약서(내자재: 기본 거래계약서, 외자재: Offer Sheet 또는 확정 P/O)에 따른다.

5.11 구매 기준정보 관리

5.11.1 구매기준정보는 ERP 내에 통합 관리한다.

5.11.2 구매기준정보의 범위

1) 공급처 기준정보: 품목별 공급처

2) 단가 기준정보: 품목별 단가, 공급처별 단가, 품목별 표준단가

3) 발주 기준정보: 공급처별 배분비, 구매 L/T, 최소발주 수량

4) 납입지시 기준정보: 자재 Type, L/T(검사, 물류, 공정)

5) 기타 기준정보: MRP 담당자

5.11.3 구매 기준정보는 발주 전 사전입력 관리한다.

5.12 단가 관리

5.12.1 발주에 사용된 모든 품목단가는 ERP 내 구매기준정보관리(이하 "구매마스터"라 한다)에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

5.12.2 개발샘플/상품/유상사급 구입 등의 사유로 단가합의 전 발주 시 구매마스터에 가단가 등록하며, 최종단가 결정시 진단가로 전환한다.

5.12.3 발주등록 시 구매마스터의 단가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12.4 구매 담당자는 신규발생 품목은 1 주이내 단가 결정하여 구매마스터에 등록하고, 품목 생성 1 주이내 긴급발주 발생 시 기존 유사품과 규격검토를 통해 가단가 적용한다.

5.12.5 구매마스터에 등록된 가단가는 해당 품목의 매입 발생 전 진단가로 전환한다.

5.12.6 구매담당자는 단가 변경 시 마다 구매마스터의 해당 내용을 갱신한다.

5.13 단종 관리 (자재, 제품) △2

5.13.1 구매 담당자는 협력사(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단종 자재(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소요량을 분석하고, 보유 재고와 협력사(고객) 재고를 확인하여 수급/통제 범위를 산정한다.

5.13.2 구매 담당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Risk 상태를 보고하고, 유관부서 합의를 통해 대체품 발굴 및 검토/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5.13.3 구매 담당자는 단종 자재에 대해 최종 승인된 대체품 정보를 협력사(고객)에 공유하여 향후 수급/생산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13.4 구매 담당자는 협의된 단종 관리 자재(제품)의 범위에 따라 PO정리하고 입고 관리를 통한 수급(생산) 문제 발생에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

5.14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5.14.1 [별표2]"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에 따른다.

5.15 협력업체의 선정(등록)

5.15.1 [별표3]"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에 따른다.

5.16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5.16.1 [별표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에 따른다.

5.17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5.17.1 [별표5]"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에 따른다.

## 6. 기록 보존 년한

6.1 주문서 (P/O: Purchase Order,원/부자재) : 3 년

6.2 기본 거래 계약서: 3 년

## 7. 관련 절차서

7.1 자재관리절차서(HSA-703D)

7.2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절차서(HSA-701D)

7.3 수입검사 절차서(HSA-606D)

부 칙

1. 이 절차서는 2016년 10월 0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절차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절차서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표준번호 : HSA-700D | PMD 구매관리 절차서 | 개정번호 : 02 |
|---|---|---|
| 제 정 일 : 2016. 09. 26 | | 개 정 일 : 2025. 9. 25 |

## 업무 프로세스

| 입력(Input) | 프로세스(Process) | 출력(Output)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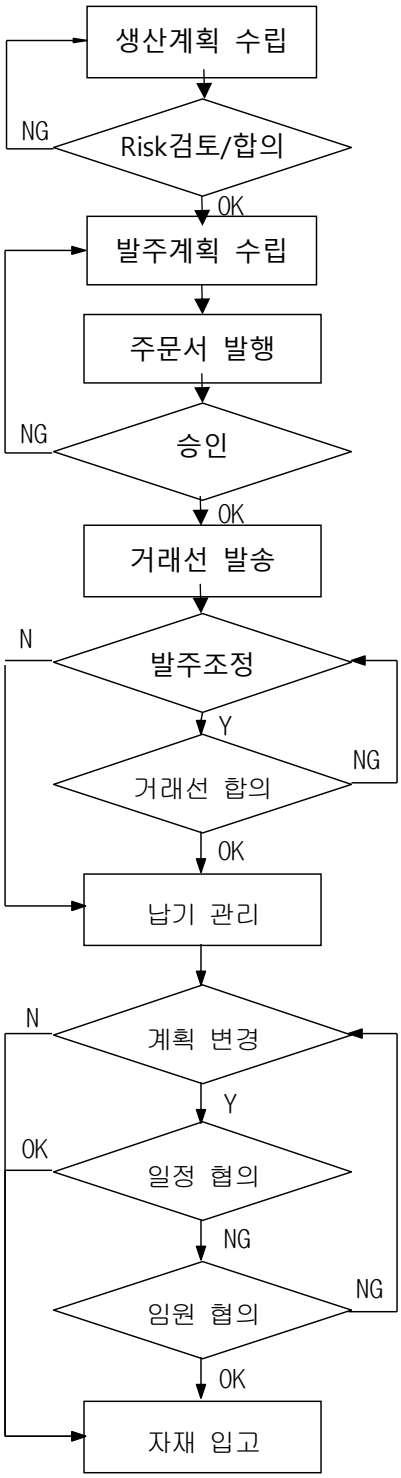 | |

| 표준번호 : HSA-700D | PMD 구매관리 절차서 | 개정번호 : 02 |
|---|---|---|
| 제 정 일 : 2016. 09. 26 | | 개 정 일 : 2025. 9. 25 |

# 주 문 서

| 결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 |

THIS ORDER NUMBER MUST APPEAR ON ALL INVOICE SHPPING DOCUMENTS, CARTONS AND CORRESPONDENCE RELATED TO THIS ORDER.

| 주문 번호(P/O NO) | 팀/파트 | PAGE |
|---|---|---|
| | | |

협 력 사 (乙)
TEL. FAX.

발 주 처 (甲) **Hansol 한솔 테크닉스**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27-29
대표이사 유 경 준
TEL : (0434)530-8650~60 FAX : (0434)536-5958

| 오더발령일자 | 거래처코드 | 지불조건 | 화폐단위 |
|---|---|---|---|
| | | | |

납품장소
한솔 테크닉스 진천공장

참고사항

| CODE | 품 목 번 호 (CODE) REV H S NO<br>품 목 명 칭 및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br>금 액 | 납 기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조건 :
1. 물품의 품질, 구조제원 등은 "갑"이 승인한 도면 또는 견본과 동일하며, 당사 검사기준에 합격 해야 한다.
2. "을"이 납기연체로 "갑"의 생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연체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을 대금 공제한다.
3. 본 발주량에 대해 "을"은 "갑"의 서면허가 없이 생산, 도면, 견본, 기타 자료를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4. "갑"의 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단가는 납품일 기준 최종 합의된 화폐와 금액을 적용한다.
6. 환율은 입고월 기준 D-2개월 26일부터 D-1개월 25일까지의 최초 매매기준율 기간 평균을 적용 한다.
(단, 해외 입고 자재는 B/L발행일 기준 당일 환율을 적용한다.)

| 수량 / 총액 |
|---|
| |
| 공 급 자 서 명(확인) |
| |

3

| PREPAERED | CONFIRMED | APPROVED |
|---|---|---|
| | | |
| | | |

HSA-700D-01 한솔테크닉스㈜

# PURCHASE ORDER

THIS ORDER NUMBER MUST APPEAR ON ALL INVOICE. SHIPPING DOCUMENTS, CARTONS AND CORRESPONDENCE RELATED TO THIS ORDER

| P/O NO | TEAM / PART | PAGE |
|---|---|---|
| | | |

Hansol **Hansol Technics Co.,Ltd.**
5 FL. B-PINE AVENUE Bldg.,EUljiro 2-ga, Jung-gu, Seoul, Korea

VENDER(MESSRS)
Tel. Fax.

| ORDER DATE. | VENDER CODE | PAYMENT TERM | CURRENCY |
|---|---|---|---|
| | | | |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
|---|---|
| | |

REMARKS

| CODE | MATERIAL CODE REV H S NO<br>DESCRIPTION & SPEC | UNIT | Q'TY | UNIT PRC<br>USD Amt. | <br>Local Amt. | ACTUARY DELIVERY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Purchase Conditions
1) The unit price will be based on the final agreed currency and amount as of the delivery date.
2) The purchase amount will be recalculated us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from the 26th of the month two months prior to the purchase month to the 25th of the previous month.
3) Monthly purchase totals will be rounded to the nearest whole number, with USD and THB rounded to two decimal places.
※ PLEASE CONFIRM BY SIGNING THE DUPLICATE AND RETURN TO US ACCEPTED BY

**ACCEPTED BY** **ORDERED BY**

| TOTAL QTY / TOTAL AMOUNT | |
|---|---|
| USD Amt. | Local Amt. |
| | |

HSA-700D-01 한솔테크닉스㈜

# 기 본 거 래 계 약 서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

본 계약은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한솔"이라 합니다)가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합니다)에게 의뢰하는 자재 ; 기물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등의 매매 및 제조 ; 가공 ; 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솔과 협력사는 위 업무에 대하여,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합의하였고, 합의한 사항을 뒷면의 각 조문과 같이 서면으로 기재하여, 이를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라 합니다)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사의 대표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한솔과 협력사는 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한다.

. . .

한 솔 상 호 :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00
대표자 : 대표이사 유경준 (인)

협력사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솔이 협력사에게 의뢰하는 자재 ; 기물 또는 물품(이하" 목적물" 이라 한다)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 (이하 "제조 등" 이라 한다)에 관해 한솔과 협력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기본원칙)**
①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④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존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 체결 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종전 기본계약에 따라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약)**
본 계약서는 한솔과 협력사가 목적물의 매매 및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합의한 기본계약서이며, 한솔과 협력사의 별도의 합의 또는 개별계약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5조 (개별계약)**
① 개별계약에는 목적물 등의 발주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개별사안별로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솔은 협력사에게 사전에 합의한 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개별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단, 협력사가 주문서 수령일로부터 협력사의 주소지의 현지시간으로 10일내에 해당주문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솔과 협력사는 서면합의로 본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개별계약의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솔은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솔은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한솔이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협력사는 한솔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솔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단, 한솔이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⑤ 제2항의 통지에는 협력사가, 제3항의 회신에는 한솔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7조 (주문서의 교부 등)**
① 한솔은 주문서를 협력사의 제8조에 따른 업무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교부받은 주문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③ 협력사는 한솔의 동의 없이 주문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열람 ; 맡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업무담당자)**
① 한솔과 협력사는 각자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통지, 요구, 주장 등의 의사를 전달 및 상대방에게 의사를 수령, 상대방과 협의 등의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대표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② 상대방 업무담당자에 대한 모든 통지, 요구, 주장은 서면(서면통지에는 전자우편도 포함하며, 전자우편에 첨부된 문서는 서면통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인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발송한 문서는 상대방 주소지의 시간으로 그 다음날에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한솔과 협력사는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솔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협력사가 본 계약서에 따라 한솔에게 납품하는 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이다.
3. "제품"은 협력사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가공, 수리 등을 하여, 한솔의 고객에 대한 판매 또는 홍보 등의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원자재"라 함은 협력사가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한솔 또는 제3자로부터 납품받는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뜻한다.
5. "대여설비"는 한솔이 협력사에게 대여한 도면, 시방서, 규격 등을 뜻한다.
6. "지급재"란 한솔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부품,반제품,제품으로서, 협력사가 해당대금을 한솔에게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한솔의 소유이다.
7. "대여품"이란 한솔이 협력사에게 대여한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치공구, 측정구 및 금형으로서, 한솔의 소유이다.
8. "납기"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한솔이 지정하는 장소에 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하는 기일을 말한다.
9. "롯트(Lot)"란 협력사가 한솔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생산단위이며, 협력사가 동일한 주(注)에 제작 또는 납품한 목적물은 동일한 롯트로 판단한다.
10. "신뢰성"이란 목적물을 개선 또는 개발하여 한솔의 양산승인을 받기 이전단계를 의미한다.
11. "품질기준"이라 함은 한솔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수명, 성능, 내구성, 신뢰성, 호환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재 또는 목적물이 구비하여야 할 사양(SPEC), 설계, 구조, 재질, 생산 장소 및 공정, 포장 등의 개발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12. "품질불량"이라 함은 원자재 또는 목적물이 제1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것을 뜻한다.
13. "품질담당자"는 협력사가 목적물 납품 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물의 품질문제의 해결 또는 AS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인력 또는 조직이다.
14. "변경사항"은 목적물의 사양, 설계, 구조, 재질, 생산 장소 및 공정, 포장의 변경 등과 같이 목적물의 수명, 성능, 내구성, 신뢰성, 호환성 등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15. "초도품"은 협력사가 한솔에게 양산 승인을 받기 전에, 납품하는 목적물이다.
16. "시제품"은 협력사가 한솔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처음 제조한 목적물의 첫번째 생산한 롯트이다.
17. "불량검사"는 제53조에 따라서 품질불량이 의심되는 목적물에 대하여 불량현상 및 불량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이다.
18. "간헐성 불량"은 협력사가 한솔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 동일 롯트의 목적물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품질불량이 3회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19. "생산차질비용"이란 한솔이 정상적인 조건에서의 생산량과 일부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다시 정상적인 조건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생산량 차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단, 생산량의 차이에 따른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입된

요소들의 비용들도 포함된다.

20. "정보제공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 중에 개별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일방이다.
21.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당사자 중에 정보제공자가 지급한 개별정보를 수령하는 일방이다.
22.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한솔이 협력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한솔이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3. "기술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나.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협력사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급재의 지급)**

① 한솔은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시급재를 협력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한솔이 제공한 시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협력사가 취득한다. 단, 무상인 경우에 한해 시급재의 소유권은 한솔에게 있다.
④ 협력사는 한솔이 무상 제공한 시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한솔의 서면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협력사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시급재를 한솔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⑥ 시급재가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협력사가 해당 시급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한솔이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⑦ 협력사가 한솔로부터 시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34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한솔은 협력사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⑧ 한솔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시급재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시급재에 대해 협력사는 한솔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한솔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 및 협력사의 관리소홀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시급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대여서류의 관리)**

①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재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력사는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한솔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협력사는 대여서류를 별도로 "비밀표기"가 없더라도 비밀문서로 취급하며, 한솔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한솔이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④ 협력사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솔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한솔은 품질의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기구류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협력사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한솔은 협력사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 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협력사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한솔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솔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협력사는 대여 받은 한솔의 설비 등을 협력사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한솔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한솔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한솔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협력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솔의 지시에 따라 협력사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한솔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협력사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 등에 대한 한솔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한솔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 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한솔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협력사는 설비 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솔에게 반환하며, 한솔은 필요한 경우에 협력사의 동의를 얻어 설비 등의 사용 및 보관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협력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협력사가 한솔로부터 설비 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한솔은 협력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 (금형)**

① 한솔은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협력사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상·상각방법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②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한솔에게 귀속한다. 단, 상각완료전이라도 한솔이 미상각된 금액을 협력사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한솔의 소유로 한다.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협력사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협력사는 해당 금형을 한솔에게 공급하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재하도급)**

① 협력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단, 협력사는 한솔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한솔에게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4.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협력사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한솔의 손해에 대해 협력사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협력사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한솔의 지명에 따라 협력사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협력사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한솔에게 고지하였거나 협력사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한솔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16조 (한솔의 안전조치)**

① 한솔은 협력사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한솔은 한솔의 근로자와 협력사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한솔은 협력사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한솔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솔의 근로자, 협력사 및 협력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⑤ 한솔은 협력사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협력사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한솔은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작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17조 (협력사의 안전조치 의무)**

① 협력사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협력사는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협력사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장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⑤ 협력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⑥ 협력사는 한솔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솔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안전관리비)**
① 한솔은 협력사와 협의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한솔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협력사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원청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한솔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협력사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제조 등 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한솔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솔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19조 (납품)**
① 협력사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의 목적물을 한솔에게 납품하며, 한솔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협력사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② 협력사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솔과 협의하여 그 납품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솔과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주문서 등의 변경 없이 제조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솔은 제조 등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한솔의 요구로 제3항에 따른 제조 등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조 등의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한솔이 부담한다.
⑤ 협력사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한솔에게 통보하고, 한솔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다.
⑥ 협력사는 한솔이 승인한 경우 분할 납품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6항의 경우, 한솔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협력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 (포장규격의 준수)**
협력사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는 한솔이 정한 포장시방 및 포장수량, 포장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험부담)**
목적물이 한솔에게 인도되기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및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한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책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22조 (납품의 수령)**
① 한솔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한솔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협력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한솔의 손해에 대하여만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
2. 한솔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목적물이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한솔이 부담한다.
3. 협력사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한솔이 부담한다.

**제23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한솔은 협력사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한솔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한다.
③ 한솔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솔이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솔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한솔은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한솔이 협력사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협력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솔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솔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한솔. 다만, 재검사를 위해 협력사가 목적물에 대해 보수 등을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협력사

**제24조 (지체상금)**
① 협력사가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한솔은 지체일수에 10,000분의 15의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 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한솔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권리 ·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한솔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천민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솔이 공급하기로 한 시급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한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조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협력사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한솔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단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협력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한솔이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한솔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 (부족분 ·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협력사는 한솔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협력사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협력사는 불합격품을 7일 이내에 인수한다.
④ 협력사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한솔은 이를 협력사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협력사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한솔이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협력사는 한솔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한솔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력사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한솔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한솔의 동의 없이 한솔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한솔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26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한솔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한솔은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솔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한솔이 공급한 시급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한솔의 시급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목적물의 소유권)**
① 한솔이 발주통보의 제2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또는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 발주통보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검사 또는 검사 제외 발주통보(일부만 검사하기로 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발주통보를 포함)인 경우에는 실제 한솔의 수령 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솔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할 때에 한솔에게 이전된다.

**제28조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

① 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한솔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추후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② 한솔은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협력사에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솔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협력사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한솔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한솔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단, 경비 중 한솔과 협력사가 합의하여 한솔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한솔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경쟁 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8.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우에 한솔의 경영경각,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경우, 협력사는 한솔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솔과 협력사는 목적물의 제조 등의 업무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⑤ 한솔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협력사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협력사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① 한솔과 협력사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양사는 합의한 상식에 의하여 납품단가를 변동할 수 있다.

**제30조 (감액금지)**

① 한솔은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단, 한솔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솔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협력사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협력사와 제28조의 납품단가연동계약에 참여하여, 양사가 합의한 해당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5. 한솔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급재를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자재가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경영경각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한솔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한솔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협력사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한솔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 역시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⑤ 한솔이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솔은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한솔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한솔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통지한다.

단,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한솔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한솔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협력사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한솔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2조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협력사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솔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력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협력사는 조합에게 한솔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 원자재에 소요되는 원자재비용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상한으로 한다.
2.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한다.
3. 노무비가 하도급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상한으로 한다.

   단,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한다.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협력사는 조합에게 한솔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협력사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자재비용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한솔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한솔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한솔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솔과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한솔 또는 협력사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한솔과 협력사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한솔 또는 협력사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33조 (선급금)**

① 한솔과 협력사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한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③ 한솔은 협력사에게 제1항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발주자의 선급금)**

① 한솔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조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② 한솔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한솔이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협력사는 한솔의 동의 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한솔은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단,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한솔과 협력사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한솔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제조 등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협력사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③ 한솔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한솔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한솔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한솔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한솔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단,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⑥ 한솔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단,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한솔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한솔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협력사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한솔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 (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한솔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한솔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협력사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사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한솔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때
3. 한솔이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협력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력사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솔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협력사에 대한 한솔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한솔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협력사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한솔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한솔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한솔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제37조 (대금의 상계)**

① 한솔은 협력사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시급재의 대금 및 지체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협력사로부터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단, 한솔은 협력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한솔이 제1항의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상계할 한솔과 협력사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협력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8조 (대물변제 금지)**

① 한솔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솔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한솔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한솔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한솔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한솔은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공부를 제공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를 제공한다.

④ 한솔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협력사에게 내주고 한솔과 협력사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한솔이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협력사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한솔과 협력사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한솔과 협력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9조 (내국신용장 개설)**

① 한솔은 수출할 목적물을 협력사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협력사에게 개설한다.
단,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한솔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② 한솔은 수출할 목적물을 협력사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협력사에게 발급한다.

1. 한솔이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협력사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40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한솔이 수출할 목적물을 협력사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한솔이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1조 (하자담보책임 등)**

① 협력사는 계약으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증서를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한솔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단, 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솔은 협력사에게 목적물 하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솔은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협력사의 제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솔이 제공한 자재 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한솔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

④ 한솔과 협력사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가 협력사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한솔이 부담한다.

⑤ 협력사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한솔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솔에게 귀속한다.

⑥ 한솔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협력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2조 (품질보증 및 변경)**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제조 등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및 납품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한솔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협력사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의 품질보증범위는 주문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목적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며 한솔은 협력사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목적물의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이외에 협력사가 서면으로 제공하여 한솔이 승인한 별도의 목적물 품질보증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목적물의 제조 등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등에 명시한다.

⑤ 한솔 또는 협력사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주문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솔 또는 협력사는 상대방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하나 이상 만족하여야 한다.
1. ISO 9001
2. TS 16949

②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하나 이상 만족하여야 한다.
1. ISO 14001
2. QC 080000

③ 본 계약 체결 시점에 협력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사는 지체 없이 한솔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4조 (품질담당자)**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납품이전 또는 이후에 목적물의 품질불량 해결 또는 애프터서비스(AS)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업무의 적격성 갖추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품질담당자가 선정되어야 한다.

② 품질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협력사는 한솔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품질담당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개선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점검일자별로 기재하여, 기록 및 관리하며, 한솔의 요청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점검한 내용
2. 점검결과 문제점

④ 품질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목적물의 품질관리에 힘써야 하며, 다음 각 호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솔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품질불량 발견
2. 특이사항 발견

**제45조 (계측기 관리)**

① 협력사는 검교정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원자재 및 목적물의 수입검사 및 출하검사 및 신뢰성검사 등을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협력사는 한솔이 요청하는 시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한솔에게 제출한다.

**제46조 (신뢰성 시험관리)**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신뢰성 시험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협력사는 한솔과 합의한 시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한솔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신뢰성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솔이 승인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47조 (제조공정 관리)**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품명 및 제조시기를 추적할 수 있는 식별체계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수립 및 유지, 관리하며, 한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목적물 중 개장품 또는 초도품, 시제품인 롯트는 다른 목적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표시를 하고, 변경사항 신고서 양식에 준하여 한솔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한솔 또는 그의 고객 등으로부터 목적물의 품질불량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경우, 협력사는 현지시간으로 3영업일 이내에 불량분석과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불량의 원인 또는 개선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한솔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원자재 수입검사)**

① 협력사는 목적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가 공정에 투입 이전에 각 품질기준(SPEC)에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원자재의 개별 수입검사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단, 한솔과 협력사가 합의한 수입검사 기준이 있으면, 이를 따른다.

③ 협력사는 전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검사를 하는 검사원의 적격성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 협력사의 원자재의 유해물질 함유여부가 유럽연합이 제정한 "전기, 전자장비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RoHs)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QR코드 첨부)를 한솔에게 제공한다.
단, 원자재의 특성상 위 지침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협력사가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솔은 임의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 (목적물 수입검사 및 이의신청 등)**

① 한솔은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의 완료 통지를 받거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의 제조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한솔과 협력사가 합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솔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한솔이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한솔은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한솔이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협력사에게 통지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솔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0조 (수입검사비용의 부담)**

① 목적물 수입검사비용은 한솔이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48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는 한솔이 부담한다.
단, 재검사를 위해 협력사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51조 (초도품)**

① 협력사는 초도품을 납품할 경우, 한솔에게 납품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부검증 및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하고, 초도품임을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한다.

② 협력사는 한솔에게 초도품의 검수 합격을 받은 후, 양산하여야 한다.

**제52조 (목적물 출하검사)**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납품 이전에 출하하는 목적물이 한솔의 품질기준(SPEC)에 만족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목적물의 출하검사 기준이 수립되고,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단, 한솔과 협력사가 합의한 출하검사 기준이 있으면, 이를 따른다.

③ 협력사는 출하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적격성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 협력사는 출하검사 중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내부 피드백(Feed Back) 및 조치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53조 (품질불량의 대상)**

목적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불량 대상으로 분류된다.
1. 한솔의 수입검사 또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2. 한솔의 공정에 Line-Stop이 발생한 경우
3. 한솔의 고객으로부터 Claim이 발생한 경우
4. 한솔이 1호 외에 검사를 통하여, 한솔의 품질기준에 불합격을 발견한 경우
5. 협력사가 한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한 경우

**제54조 (품질불량의 판단)**

① 제52조에 따라서 목적물이 품질불량 대상으로 분류되면, 한솔과 협력사는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불량검사를 통하여, 품질불량을 판단한다.

② 전항에 따른 검사일정은 한솔이 협력사에게 지정하며, 협력사는 이를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일정에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불량검사 방법은 한솔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솔의 요청을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다면, 제1항에 따른 목적물을 전부 불량품으로 판단한다.

**제55조 (품질불량의 처리기준)**

제54조에 따라 품질불량으로 판단된 목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롯트별 불량률이 3% 이상이면, 해당 롯트를 전수교체.
2. 롯트별 불량률이 3% 미달이면, 품질불량이 목적물만을 개별로 교체.
3. 롯트별 진행성 불량의 경우는 해당 롯트를 전수교체.
4. 한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생산된 목적물은 전수교체.

**제56조 (품질불량의 처리방법 및 비용)**

① 제55조에 따른 목적물의 교체품은 품질불량이 개선되거나 또는 품질불량이 발견되지 않은 신품으로 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교체비용은 전항 외에 제품 또는 목적물 교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합산액이다.
1. 제55조에 해당하는 목적물 또는 제품의 회수 및 재설치비용.
2. 1호에 따른 물류비용(운송비 및 창고비를 포함한다).
3. 1호에 따른 목적물 또는 제품의 재가공비용.
4. 1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는 대체품 지급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모든 비용.
5. 한솔 직원의 교통비 또는 숙박비.
6. 제53조 2호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차질 비용.
7. 제53조 각 호에 따라 한솔의 고객에게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하게 될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액.
8. 위 각 호들의 세금, 보험, 관리비 등의 제반비용.

**제57조 (품질불량의 처리비 부담)**

① 제54조에 따른 귀책자는 제54조에 따른 제55조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귀책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항의 책임을 한솔과 협력사의 합의에 따라 분담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한솔과 협력사는 전항의 책임을 절반씩 분담한다.

**제58조 (전수검사)**
① 한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솔이 보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전수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전수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1. 협력사의 목적물이 제53조 1호 또는 3호에 해당될 때.
2. 협력사가 제45조 내지 제52조 사이에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반한 때.
② 전항에 따라 한솔은 전수검사를 결정할 경우, 협력사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③ 협력사는 1회에 한하여, 전항의 재검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재검사를 결정한다.

**제59조 (제조물책임)**
① 협력사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한솔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협력사는 한솔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을 한다.
단, 그 협력은 협력사의 목적물에 대한 제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협력사의 사유로 인해 한솔이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협력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60조 (기술의 지도 · 훈련 및 협력)**
① 한솔은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협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한솔의 기술자를 협력사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한솔이 부담한다.
단, 협력사의 요청으로 한솔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61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한솔은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솔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한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 · 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한솔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협력사가 한솔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한솔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협력사와 체결한다. 이 경우, 한솔은 별도의 비밀경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 · 폐기 방법 및 일자.
④ 한솔은 취득한 협력사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62조 (기술자료 임치)**
①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한솔과 협력사가 합의하여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솔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협력사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력사가 동의한 경우.
2. 협력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협력사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한솔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솔이 부담한다. 단, 협력사가 한솔의 요구 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63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협력사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한솔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한솔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한솔과 협력사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③ 협력사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한솔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한솔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단, 한솔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는 한솔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협력사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한솔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④ 한솔과 협력사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한솔 또는 협력사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한솔과 협력사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한솔 또는 협력사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⑤ 협력사는 한솔의 지정 사양 제외한 부품 또는 제조방법 등으로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에는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한솔이 제3자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사의 책임과 모든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종결해야 하며, 정기적 또는 한솔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분쟁해결의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제64조 (RBA강령준수 및 ESG경영)**
① 협력사는 최신의 RBA 강령 및 표준을 준수한다.
② 협력사는 ESG경영을 지향한다.

**제65조 (원산지 표시)**
협력사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취급금지)**
협력사는 한솔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산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미국 분쟁광물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지역의 해당광물.

**제67조 (관계 자료의 제출)**
① 한솔은 제조위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력사에게 업태현황서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또는 기타 경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비밀유지)
①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비밀경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9조 (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솔과 협력사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한솔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제조등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솔과 협력사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목적물의 제조등이 변경된 경우, 한솔은 계약변경 이전까지 협력사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기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솔 또는 협력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 (계약이행 점검)**
① 한솔은 협력사에게 정기 및 수시로 본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협력사가 전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협력사의 현지시간으로 2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솔은 협력사에게 발주량 조정 및 거래중지 등을 할 수 있다.

**제71조 (사업장 출입)**
한솔 또는 협력사는 이 기본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 · 질서의 유지에 협조한다.

**제72조 (손해배상)**
① 한솔 또는 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행정제재 및 사법적 처벌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3.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4.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을 한 경우.

② 한솔 또는 협력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협력사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한솔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이 경우에 제15조 제3항을 준용한다.

한솔이 제26조, 제28조,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협력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솔이 제61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협력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한솔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3조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한솔 또는 협력사는 다른 조항에 정함이 없는 경우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한솔 또는 협력사가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75조 (잔존의무)**

한솔과 협력사는 목적의 달성,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제59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또는 제6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3. 제68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76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81조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한솔과 협력사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일부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한솔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한솔 또는 협력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한솔 또는 협력사가 집중관리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솔 또는 협력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구조촉진법 또는 채권단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관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한솔 또는 협력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솔 또는 협력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상방이 인정한 경우.

② 한솔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한솔 또는 협력사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제조 등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한솔 또는 협력사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한솔이 협력사의 책임 없이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사의 제조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협력사가 한솔의 책임 없이 악정한 제조 등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 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협력사가 한솔의 책임 없이 제조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목적물의 제조 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협력사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협력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한솔 또는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 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한솔 또는 협력사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한솔 또는 협력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한솔은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 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고, 협력사는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0조 제1항에 따라 한솔에게 납부한다.

⑦ 협력사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목적물의 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 한솔과 협력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단,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한솔은 협력사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3. 협력사는 한솔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⑨ 한솔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목적물의 제조 등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2. 한솔로부터 수령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솔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대여품이 협력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한솔이 제공한 원자재 등 중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한솔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협력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79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솔과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솔과 협력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80조 (특별약정)**

① 한솔과 협력사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한솔은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약정의 내용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특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한솔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한솔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한솔이 의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협력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한솔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한솔(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한솔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한솔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협력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한솔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한솔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사정에 한솔과 협력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협력사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단, 발주자와 한솔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협력사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협력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협력사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한솔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한솔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협력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1조 (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 관련법령을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협의하고, 협의가 없으면 상관습에 따른다.

② 한솔과 협력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한솔은 협력사가 전항의 위반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한솔은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Hansol

**Product Purchase Agreement**

This Master Agreement(this "Agreement") was entered into between Purchaser Hansol Technics Co., Ltd.("Purchaser") and Seller [ ]("Seller") with respect to matters commonly applicable to purchase, subcontracting, etc. of the products under Article 3 hereof(the "Product(s)").

**Article 1 (Master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Master Agreement documenting matters agreed to between Purchaser and Seller in connection with purchase, subcontracting, etc. of the Products.

**Article 2 (Individual Agreement)**

① Individual agreements shall provide for the date of placement of order for the Products, etc., name/specifications/quantity/unit price of the Products, due date and location of delivery, method and period of inspection, method and due date of payment, etc.

② If this Agreement conflicts with an individual agreement, the individual agreement shall prevail, and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matters not specified in the individual agreement in a supplementary manner.

③ Notwithstanding Paragraph ① above, an individual agreement may be replaced by the delivery of a written order stating the matters in the foregoing paragraph by Purchaser to Seller. Provided, however,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Seller expresses its intention to refuse such written order within seven days after receiving it.

④ Purchaser and Seller may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n individual agreement by mutual agreement.

**Article 3 (Products)**

Seller shall supply Purchaser with the Products as below:

1. ; and

2.

**Article 4 (Transfer of Right and Obligation)**

Purchaser or Seller shall not transfer or supply as collateral to a third party or otherwise dispose of its right or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Hansol

**Article 5 (Management of Lent documents)**

① Seller shall manage drawings, specifications, standards, etc. lent from Purchaser(the "Lent documents") with due care and shall not use the Lent documents for a purpose other than those hereunder.

② If Purchaser has completed using the Lent documents, or upon Purchaser's request, Seller shall forthwith return them to Purchaser.

③ Seller shall not copy or modify the Lent documents, or give access to and lend or otherwise dispose of the Lent documents or copied or modified documents permitted by Purchaser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Purchaser.

④ Sell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to Purchaser by its destroying or damaging the Lent documents or its breach of the foregoing paragraph.

**Article 6 (Unit Price)**

① Purchaser and Seller shall determine the unit price of the Products by mutual agreement.

② If the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unit price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have changed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or design, etc. during the term hereof, Purchaser or Seller may request the other party revise the unit price.

③ If the determination of the unit price under Paragraph ① or ② above is delayed, Purchaser and Seller may apply a temporary unit price to the Products after mutual consultation, and a difference between such temporary unit price and the unit price determined after mutual consultation shall be settled on a retroactive basis.

**Article 7 (Granted/Leased Items)**

① If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including those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r upon Seller's request, Purchaser may grant all or part of materials or components used for manufacturing of the Products to Seller(the "Granted Items").

② If there are justifiable reasons, including those f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the Products, or upon Seller's request, Purchaser may lease jigs, measuring instruments, molds, etc. used for manufacturing to Seller(the "Leased Items").

**Article 8 (Agreement on Granted/Leased Items)**

① Purchaser and Seller shall enter into an individual agreement under Article 2 hereof on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under Article 7 hereof.

② If Seller has received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directly from a third party designated by Purchaser, it shall forthwith send Purchaser a receipt thereof.

③ Seller shall forthwith inspect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upon receiving them and promptly notify Purchaser of any problem therein.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④ Seller shall manage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with due care and shall not use for a purpose other than those hereunder or sell, lend to, or establish a security right for, a third party otherwise dispose of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in a manner infringing Purchaser's ownership thereof,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Purchaser.

⑤ Seller shall disclose the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in an appropriate manner so that they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its own assets and also specify in its ledger of management of the articles that they are owned by Purchaser.

⑥ Sell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Purchaser's Granted Items and Leased Items from being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⑦ The Granted Items shall remain under Purchaser's ownership until Seller pays the relevant price to Purchaser in full.

⑧ Upon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grant or lease of the Granted Items or Leased Items or cancellation/termination hereof, Seller shall forthwith return them to Purchaser.

⑨ If the Granted Items or Leased Items are destroyed or damaged, Seller shall provide Purchaser with complete replacements of such items or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thereby to Purchaser as long as the cause thereof is attributable to Seller.

**Article 9 (Creation and Depreciation of Molds)**

① Purchaser may cause Seller to create molds required to manufacture the Products, etc.

② In connection with the foregoing paragraph, Purchaser and Seller shall enter into an individual agreement under Article 2 hereof.

③ The ownership of molds of which depreciation is completed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shall belong to Purchaser.

④ Even if the cost of creation of molds of which depreciation is completed is fully borne by Seller, it shall be determined after mutual consultation who shall own such mold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hereof.

**Article 10 (Due Date of Delivery)**

① The due date of delivery shall mean the date when the Products shall be delivered to a place designated after consultation between Purchaser and Seller hereunder.

② If Seller desires to deliver the Products to Purchaser before the due date of delivery, it may change such due date after consulting with Purchaser in advance.

③ If Purchaser desires to change the due date of delivery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etc., it may change such due date after consulting with Seller in advance.

**Article 11 (Method of Delivery)**

① Seller shall, at its own responsibility and expense, deliver the Products ordered by Purchaser to Purchaser on the due date of delivery.



② Seller shall not deliver the Products to Purchaser in installments unless permitted by Purchaser.

③ If Seller delivered the Products to Purchaser in installments in breach of the foregoing paragraph, Purchaser may elect to treat such Products as delivered or store them temporarily.

**Article 12 (Compliance with Packaging Standards)**

Seller shall comply with the specifications, quantity and standards of packaging set by Purchaser when delivering the Products to Purchaser.

**Article 13 (Inspection)**

① Purchaser shall inspect the Products upon the delivery thereof by Seller.

② Purchaser shall give Seller written notice of the results of its inspection of the Products within 10 days after receiving them unless there i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do so, and if Purchaser fails to give such notice to Seller within the period above, such products shall be deemed to have passed Purchaser's inspection.

**Article 14 (Undersupply and Oversupply; Failed Products)**

① If Purchaser's inspection under Article 13 hereof finds undersupply of the Products, or some of them fail to pass such inspection, Seller shall promptly supply Purchaser with additional or replacement Products upon Purchaser's request. Even in this case, Purchaser shall be responsible for a delay in delivery.

② If Purchaser's inspection above finds oversupply of the Products, or some of them fail to pass such inspection, Seller shall recall such Products within a period set by Purchaser;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reason for a failure to pass the inspection is insignificant, Purchaser may accept the delivery of such failed Products, in which case the price thereof may be revised on the basis of the price of the Products by mutual agreement.

③ If Seller fails to recall failed or oversupplied Products within the period set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Purchaser may return them to Seller or destroy them after consulting with Seller, and the expenses thereof shall be borne by Seller.

**Article 15 (Transfer of Ownership)**

The ownership of the Product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Purchaser upon the delivery thereof to it.

**Article 16 (Payment)**

① Purchaser shall pay the price of the Products to Seller within a period agreed with Seller.

② Purchaser may make advance payment to Seller.



**Article 17 (Setoff)**

① Purchaser may set off any claims for the articles and other definite claims payable by Seller to the Purchaser, if any, against the obligations to pay the price of the Products to Seller in an amount equivalent thereto.

② Purchaser may make the setoff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by giving prior written notice of the details thereof to Seller.

**Article 18 (Quality Assurance)**

① Seller shall guarantee that the Products satisfy the criteria for specifications, quality and trustworthiness demanded by Purchaser from their manufacturing process until their delivery.

②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Seller shall undertake activities required for quality assuranc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lity plan to ensure the Products' satisfaction of Purchaser's criteria for specifications, quality and trustworthiness,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a measuring system, statistical processing management, keeping of the results of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establishment of a quality improvement plan and on-site feedback.

③ If Seller fails to assur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seriously affecting or threatening to seriously affect Purchaser's quality control, Purchaser may request Seller improve its quality-assurance system, and Seller shall grant such request unless there is justification for a failure to do so.

④ Purchaser and Seller may enter into a separate quality-assurance agreement on the Products, and such agreement shall be deemed as an individual agreement under Article 2 hereof.

**Article 19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Even after the ownership of the Products is transferred to Purchaser under Article 15 hereof, if any defect in the Products is acknowledged as attributable to Seller, Seller shall forthwith repair such defect or replace a defected Product with another Product at its own responsibility and expense.

**Article 20 (Burden of Risk)**

If all or part of the Products are destroyed, damaged or degenerated before their delivery to Purchaser, Seller shall assume liability for such destruction, etc. unless they were caused by Purchaser's deliberate act or negligence.

**Article 21 (Product Liability)**

① If a product liability claim or lawsuit is filed by third party against Purchaser with respect to the Products delivered by Seller to Purchaser, Seller shall, at its own responsibility and expense, defend and indemnify Purchaser against such lawsuit, etc. and keep Purchaser posted about them.



②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paragraph, Purchaser may decide that Purchaser and Seller will jointly make responses to a third party at Seller's own responsibility and expense.

**Article 22 (Confidentiality)**

① Purchaser or Seller shall not disclose business secrets of the other party that it gets to know under this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to a third party during the term hereof and after the expiration hereof.

② In connection with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above, Purchaser and Seller may enter into a separate non-disclosure agreement, and such agreement shall be deemed as an individual agreement under Article 2 hereof.

**Article 23 (Industrial Property Right)**

① If Seller desires to apply for a patent/utility model/design right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jointly developed by Purchaser in connection with Purchaser's products, it shall give Purchaser written notice thereof and obtain Purchaser's written permission.

② Matters on the devolvement, use, etc.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which applications were filed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shall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between Purchaser and Seller.

③ Purchaser or Sell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other party of a dispute over an infringement of an industrial property right to the Products, etc. upon its knowledge thereof.

**Article 24 (Re-subcontracting)**

① Seller shall not commission a third party to manufacture the Product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Purchaser.

② Even if a third party manufactures the Products and delivers them to Purchaser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Seller shall not be exempt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on such Products.

Hansol

**Article 25 (Submission of Relevant Materials)**

① Purchaser may request Seller submit a report on its business conditions, documents on its production management, quality assurance, etc. and other management-related materials to it to the extent they are reasonably required for entrustment of manufacturing.
② Seller shall grant Purchaser's request for submissions of the materials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unless there is objective justification for a failure to do so.

**Article 26 (Access to Business Place)**

Purchaser may access Seller's place of business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and shall give Seller prior notice thereof.

**Article 27 (Education and Training)**

Purchaser may dispatch its engineers to Seller's place of business to provide Seller with education on technique or give Seller's engineers required training at its place of business if such education, etc. are required for manufacturing of the Products or upon Seller's request.

**Article 28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① In the event of any of the following, Purchaser or Seller may cancel or terminate all or part of this Agreement and an individual agreement:
1. If Purchaser or Seller is subject to a disposition of transaction suspensio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2. If Purchaser or Seller is subject to a disposition of cancellation, suspension, etc. of business from a regulator; or
3. If Purchaser or Seller is deemed to have difficulty in performing this Agreement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material events in its business, including dishonored bills/checks and a third party's application for compulsory execution, commencement of bankruptcy and composition procedures or reorganization procedures against it.
② In the event of any of the following, Purchaser or Seller may give the other party written peremptory notice demanding cure of a breach or performance hereof within one month or longer and cancel or terminate all or part of this Agreement and an individual agreement if the other party fails to cure the relevant breach or perform this Agreement within the period above:
1. If Purchaser or Seller breaches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an individual agreement; or
2. If it is deemed difficult in practice for Seller to deliver the Products to Purchaser by the due date of delivery as Seller refuses to manufacture the Products or delays beginning to manufacture the Product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Hansol

**Article 29 (Prior Notice of Suspension of Transaction)**

If Purchaser or Seller desires to suspend their transaction due to an unavoidable reason other than those in Article 28 hereof, it shall give the other party prior notice thereof with a grace period of three months or longer to prevent any unfair damage to the other party.

**Article 30 (Measures after Termination/Cancellation)**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r cancelled under Article 28 hereof, Seller shall forthwith grant Purchaser's request for supply of the Products, whose manufacturing was commissioned by Purchaser, prior to the due date of supply thereof.

**Article 31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

If Purchaser or Seller suffers damage due to any reason below, it may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gainst the other party:
1. If Seller fails to meet the due date of supply of the Products;
2. If Purchaser or Seller breaches this Agreement or an individual agreement; or
3. If Purchaser or Seller cancels or terminates this Agreement under Article 28 hereof.

**Article 32 (Dispute Resolution)**

① Purchaser and Seller shall resolve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and individual agreements or a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hereof or thereof after mutual consultation.
② If such dispute, etc. cannot be resolved after mutual consultation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be the competent court for the resolution of such dispute, etc.

**Article 33 (Term of Validity)**

①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one year after the date of execution hereof; provided, however, that if Purchaser or Seller does not indicate its intention to amend or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in one month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hereof,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extended automatically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for one year.



Hansol

② If any individual agreement remains in effect after this Agreement is invalidated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foregoing paragraph,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expiration of such individual agreement above.

**Article 34 (Relationship with Existing Agreement)**

Upon the execution hereof, the existing product purchaser agreement shall be invalidated.

**Article 35 (Application to Affili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any Affiliates of either Party, to the extent such Affiliates are involved in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herein.
Affiliate means, with respect to any entity, any other entit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such entity.

WHEREOF, Purchaser and Seller executed this Agreement in duplicate and affixed their signatures or seals hereon and retain one copy each.

2025, 06, 27

Purchaser : Hansol Technics Co., Ltd.
100 Euljiro, Jung-gu, Seoul, Korea
Representative Director Kyung Jun Yoo

Seller :

[별표 2]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 방식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예시)

①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 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 거래상대방 / 물품의 중요도 | 많음(5개사 이상) | 적음(5개사 이하) |
|---|---|---|
| 높음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수의계약 |
| 낮음 | 일반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 계약체결방식 | 요 건 |
|---|---|
| 수의계약 |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br>•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br>-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br>-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br>-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br>•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br>-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br>-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br>•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 특별한 기준 없음<br>-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제한경쟁계약 |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br>•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br>•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br>•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br>•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br>•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br>※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
| 지명경쟁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br>•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br>•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br>※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 시 기준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해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 변경 시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 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 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 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 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 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 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 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 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 보호를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 분기별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 회신하지 않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고 원사업자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 계약체결에 있어 정당사유 없이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 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 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신설. 2010.8.3)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자.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 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되 계약 해제.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 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 장려,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 장려,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VI.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였을 것

2. 납품단가 조정·협의기준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것

3. 실천사항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 하였을 것

4. 실천사항상의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였을 것

[별표 3]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 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 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의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실천사항 내용을 협력업체 등록. 운용 관련기준(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 하였을 것

나. 협력업체 등록. 운용 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 하였을 것

다.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시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하였을 것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별표 4]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적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 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실천사항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 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 사업자 별 당해 사업 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예시. 직전 사업 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 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 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운용한 것으로 본다.

가.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관련기준을 마련(사규, 업무지침 등)하였을 것
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기준을 공개(홈페이지 등)하였을 것
다.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라.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실적(실천사항 내용 심의 등)이 있을 것

[별표 5]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 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 법 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 회신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 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 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귀속 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 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 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 법 제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 소요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 법 제16조)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 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서면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거래내용등 기재서류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VI.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기준

◦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 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 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하도급 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것
2.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등 서면발급 시 표준양식(또는 그에 준하는 서면양식)을 채택하고 있을 것
3.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급 또는 보존해야 하는 서면의 관리 대장을사용하고 있을 것